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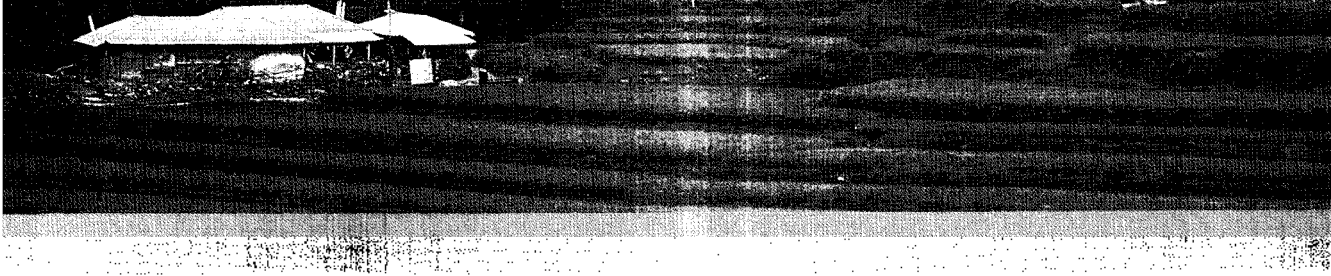
농림부가 축산업 발전의 선행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축산업등록제의 대한 안내자료로써 축산농가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게재합니다.

1. 도입 필요성 및 추진방향

- 축산업의 규모화 및 밀집사육 증가에 따라 구제역·돈콜레라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이 늘고 분뇨집중발생 등으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가경제 전반에 걱정과 손실을 끼치게 됨에 따라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필요
 - 종전의 규모화·생산증대 위주의 축산에서 환경과 조화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 선진축산으로 변화해 나가야 함
- 축산업등록제는 가축방역, 친환경축산, 축산물브랜드 육성 등 축산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축산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제도로 도입
 -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촉진
 - 축산업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사양·방역 및 안전성 등 농가정보의 수집·활용을 위한 종합적·체계적 지원수단 제공
 - ※ 네덜란드는 농가별 분뇨발생 허용량 제한, 벨기에는 농가별 사육두수 상한제정, 프랑스는 대규모 농장허가제 운영 등 세계 각국이 친환경축산을 위한 기반강화 추진

2. 주요내용

- 종축업, 부화업, 계란집하업 및 가축사육시설면적 소·닭 300㎡, 돼지 50㎡초과 농가는 시장·군수에게 등록
 - 축산업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농가정보 등을 체계적 관리
 - 가축사육업은 '05.12.26까지, 계란집하업은 '04.6.26까지 등록
- 등록시 가축질병방역, 위생·안전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·장비를 갖추어야 함
 - 부화업 :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설치,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,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, 부화장을 계사(鷄舍)와 격리
 - 계란집하업 : 내구성 재료를 사용, 환기시설, 계란포장장비, 계란무게자동선별기, 계란운반장비



- 종축업 : 내구성 재료를 사용, 사육단계별 구분사육시설, 종돈사를 일반돈사와 구분 설치
- 가축사육업 : 통풍이 잘되거나 환기시설을 갖춘 가축사육시설

■ 축산업등록 후 휴업·폐업·영업재개 및 영업승계와 아래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·군수에게 신고

- 변경신고사항 : 사업장 명칭, 대표자, 부화능력·가축사육시설면적 20% 이상 증가, 부화업 및 소사육업의 가축 종류, 백세미알 생산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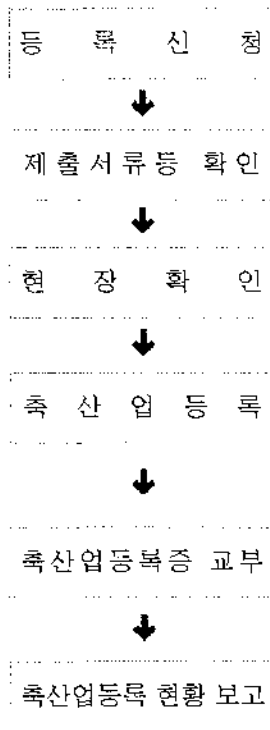
※ 백세미 :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닭

■ 등록자는 개량, 방역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

- 부화업 : 종계의 알과 양계업 등록농가가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한 알만 부화
- 종돈업 : 종돈에 대하여 개체식별표시, 종돈등 판매시 종돈혈통증명서·번식용 씨돼지혈통확인서 교부
- 가축사육업 : 단위면적당 사육에 적정한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야 함('07년 1월 1일 시행)

3. 등록신청

■ 등록신청 절차



-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
-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

-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
-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
- 축산업등록 결격사유 확인

- 시장·군수
- 시설·장비기준확인

- 고유번호 부여
- 축산업관리대장 기재
- ★ 전산등록

- 축산업등록 준수사항, 휴·폐업, 영업재개, 등록, 사항 변경시 신고의무 등 고지
- 축산업등록이 무허가 축사 등을 양성화하는 것이 아님을 농가에 설명

- 연말기준 익년도 2월까지
- ★ 전산입력시 생략

